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1589 호 2026. 11. 19.(목)

고 시
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248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(26-95)]····· 1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249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(26-94)]····· 2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250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(26-96)]····· 3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252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(26-25)]····· 4

공 고
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1577호[도시계획시설(도로 대2-77호선 외 3개 노선 및 소공원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]····· 5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1588호[「옥외광고물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문 공시송달공고]· 11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1592호[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]····· 12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1596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(허가26-90호)]····· 13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1598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(허가26-91호)]····· 14
○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-28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· 15

안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회 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248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안요*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19, 105동 20*호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 천 명 칭	○ 매곡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33.0㎡
점 용 기 간	○ 2026. 11. 21.(토) 14:00 ~ 16:30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249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		
주 소	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15-25번지 외 6필지	하 천 명 칭	○ 상안천
점 용 내 용	○ 가설교량 설치	점 용 면 적	○ 일시 : 300㎡
점 용 기 간	○ (일시) 2026. 11. 16.(월) ~ 2028. 11. 15.(수)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250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강성*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0길 22, 평창리비에르 110동 90*호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 천 명 칭	○ 매곡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33.0㎡
점 용 기 간	○ 2026. 11. 22.(일) 13:00 ~ 16:00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25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
가. 허가번호: 26-25

나. 허가 연월일: 2026. 11. 19.
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인공구조물의 설치(관로 설치)
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44-28번지 외 1필지
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
가. 면 적: 일시 4㎡, 영구 3㎡

나. 기 간:

- 일시: 2026. 11. 19. ~ 2029. 12. 31.
- 영구: 2026. 11. 19. ~ 2099. 12. 31.
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건설과)

나.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
6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1577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 대2-77호선 외 3개 노선 및 소공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58-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2-77호선 외 3개 노선 및 소공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 가.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소공원)사업
   나. 명칭 :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시설(도로 대2-77호선 외 3개노선 및 소공원)사업
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58-12번지 일원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A=8,459㎡ (도로 A=4,739㎡, 소공원 A=3,720㎡)
   가. 도로

등급	등급			연 장(m)	면 적(㎡)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
대로	2	77	32	1	62	
중로	1	424	20	219	1,078	
중로	1	425	22	167	3,589	
중로	2	277	15	1	10	

나. 소공원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비고
177	소공원	북구 신천동 148-2번지 일원	3,720	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   가. 성명 : 대한토지신탁(주) 대표이사 조 영 현
  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5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9. 10. 01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**붙임참조**
7. 열람내용 :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
8. 열람기간 :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
9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
10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☏052-241-79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(1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북구				도로	공원	편입 계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신천	88-10	전	271.0	10.0	261.0	271.0	강O주	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, 104동 402호(삼산동,벽산강변타운)				
2	신천	148	전	446.0	316.0	130.0	446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3	신천	148-2	전	561.0		561.0	561.0	이O숙 외1인	경주시 배동 42				
4	신천	148-3	전	165.0	62.0		62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5	신천	149	전	648.0	291.0	20.0	311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6	신천	153	전	3,201.0	919.0	780.0	1,699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7	신천	154-1	도	161.0	93.0	54.0	147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8	신천	156-1	전	896.0	410.0	168.0	578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9	신천	166-1	전	2,246.0	97.0		97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0	신천	166-4	전	3.0	3.0		3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1	신천	167-1	전	797.0	263.0		263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2	신천	167-3	도	99.0	1.0		1.0	울산광역시 북구					
13	신천	172-2	대	34.0	34.0		34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4	신천	172-3	도	23.0	18.0		18.0	울산광역시 북구					

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(2)

구분	소재지 북구	지번	지목	공부 면적	편입면적 도로	편입면적 공원	편입면적 편입 계	소유자 성명	소유자 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	소유권이외의 권리 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내용	비고
15	신천	173-1	대	1.0	1.0		1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6	신천	173-2	도	7.0	7.0		7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7	신천	208-1	도	11.0	9.0		9.0	울산광역시 북구					
18	신천	208-12	대	188.0	3.0		3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19	신천	208-20	전	14.0	2.0		2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20	신천	208-21	전	8.0	7.0		7.0	울산광역시					
21	신천	208-22	대	147.0	65.0		65.0	김O이		농소농업협동조합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4 (호계동)	근저당권	
22	매곡	532	대	19,293.0		15.0	15.0	매곡현대아파트					
23	매곡	539-1	도	10.0		10.0	10.0	농림축산식품부					
24	매곡	540-3	전	584.0		39.0	39.0	김O수	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65,112동1503호				
25	매곡	540-4	전	292.0		292.0	292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26	신천	745-51	장	3,642.0	1,221.0	707.0	1,928.0	대한토지신탁㈜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아셈타워)				
27	신천	752-13	도	740.0		577.0	577.0	국토교통부					
28	신천	753	도	128.0	8.0		8.0	국토교통부					

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(3)

구분	소재지 북구	지번	지목	공부 면적	편입면적	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도로	공원	편입 계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내용	
29	신천	754-1	구	553.0	53.0	26.0	79.0	농림축산 식품부					
30	신천	759-20	도	39.0	19.0		19.0	국토교통부					
31	신천	803-1	도	8,169.4	10.0		10.0	울산광역시					
32	신천	803-2	도	1,035.4	691.0		691.0	울산광역시					
33	신천	807	도	4,105.2	126.0	80.0	206.0	울산광역시					
합 계				48,518.0	4,739.0	3,720.0	8,459.0						

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2-77호선 외 3개 노선 및 소공원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 의견서

성 명		생년월일		
주 소			연락처	

[제출의견]

2026. . .

제출자 : (인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1588호

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공고제목 :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내용 : 과태료 224,000원
3. 처분근거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
4. 처분원인 : 불법광고물 게시(적발위치 : 북구관내)
5. 처분대상

업 소 명	대표자	영 업 장 소재지(사무실 작업장)
㈜에○더○유○ 이○짐 (울산 송○점)	최○석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○○○

6. 공고기간 : 2026. 11. 18.(수) ~ 2026. 12. 3.(목) (15일간)
7. 공고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8. 의견제출 :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9. 문의사항 :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미관팀(☎052-241-8032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1592호

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등록 공인 내역

연번	공인명	등록사유	등록일자	인영	비고
1	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 (지적민원사무전용)	마멸로 인한 재등록	2026. 11. 23.		

□ 폐기 공인 내역

연번	공인명	등록사유	폐기일자	인영	비고
1	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 (지적민원사무전용)	마멸로 인한 폐기	2026. 11. 23.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1596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		
점용 위치	○ 양정동 830	노선명	○ 소로 1-135
점용 목적	○ 신규 급수공사	점용 면적	○ L = 3.0m ○ A(일시) = 4.2㎡ ○ A(계속) = 0.006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1598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		
점용 위치	○ 신명동 279-2 ○ 신명동 129-2	노선명	○ 중로 1류
점용 목적	○ 신규 급수공사	점용 면적	○ L = 10.5m ○ A(일시) = 10.5㎡ ○ A(계속) = 5.5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9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 - 28호

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(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)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

1. 개정이유

○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의2)

나. 그 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(안 제6조 및 제14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 출 처

-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우 44248)
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(전문위원실)
- 전화번호 : 052)241-8983 / 팩스번호 : 052)241-8979
- 이 메 일 : haejung77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(의회소식>입법예고)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고시공고)에 첨부물로 게재하며,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범죄예방 또는 긴급 사태 대응을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수요, 교통소통, 사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22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2조”로 한다.

다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“토지가액은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”을 “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”으로, “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”를 “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토지가액은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따른”을 “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에 따른”으로, “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”를 “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, “값”을 “가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범죄예방 또는 긴급사태 대응을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수요, 교통소통, 사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제6조(주차요금 등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주차요금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 <단서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신설 09.6.16>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,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.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	다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또는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(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)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,000원까지 경감한다.	5.---------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6. ~ 13. (생 략)	6. ~ 1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)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	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) ①---------- ----------

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	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토지가액은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	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----------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-------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.	②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토지가액은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.	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에 따른 ----------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---------- 가액----------.
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주차장법」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8., 2013. 3. 23., 2016. 1. 19., 2020. 6. 9., 2024. 1. 9., 2025. 1. 31.>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
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
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,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

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4. 1. 9.> [전문개정 2010. 3. 22.]

□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

호와 같다. <개정 2016. 7. 27.>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
2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
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“전용주차자동차”라 한다)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16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16.>

[전문개정 2010. 10. 29.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	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개인정보취급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□ 동의(√표시)			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(√표시)		의견	비고
	□ 찬성	□ 반대		

「**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」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